

## 6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화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사업외 187 건인

82,875,792,269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 98 건) 41,279,092,489 원
- 사고이월 ( 38 건) 8,332,195,230 원
- 계속비이월 ( 52 건) 33,264,504,55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